
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김병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54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10.

발 의 자 : 김병주 · 윤후덕 · 김영배
허영 · 박선원 · 이건태
김태선 · 윤종균 · 소병훈
한민수 의원 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 등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반환공여구역을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그러나 도심지에 위치한 반환공여구역은 매입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, 반환 이후에도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개발이 장기간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또한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를 임대하는 경우, 현행 「국유재산법」은 영구시설물 축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장기적·안정적인 개발이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개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각·임대기간을 최대 99년까지 확대하고, 임대 시에도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되,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

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명확히 하며, 반환공여구역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연 1,000분의 10으로 완화하여 적용하여 반환공여구역의 실질적인 개발을 촉진하고,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12조제5항 및 제14조).

참고사항

이 법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354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매각 등”을 “매각, 사용허가 등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하게 할”을 “99년 이하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 매각하거나 「국유재산법」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99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(이하 “임대”라 한다)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”을 “반환공여구역을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장기분할 조건으로 매각하는”으로, “최초의”를 “지방자치단체가 최초의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환공여구역을 제2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.

⑥ 제2항에 따라 임대하는 반환공여구역의 임대료는 「국유재산법」 제32조제1항·제33조(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가액에 연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반환공여구역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한 것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(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) ① ~ ④ (생략) ⑤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, <u>매각</u>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, 지하매설물, 위험물,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2. (생략) ⑥ ~ ⑧ (생략)	제12조(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<u>매각</u> , <u>사용허가</u> 등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
제14조(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) ① (생략)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환공여구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5년 이상 <u>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</u> 하게 할 수 있다.	제14조(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99년 이하 장기분할상환</u> 조건으로 <u>매각하거나 「국유재산법」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99년 이내의 범위에</u>

1. ~ 4. (생략)
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계약에 따라 최초의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전제로 사용·수익허가나 대부를 할 수 있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때는 「국유재산법」 제52조에 따라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<신 설>

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(이하 “임대”라 한다)할 -----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반환공여구역을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장기분할 조건으로 매각하는 -----
----- 지방
자치단체가 최초의 -----

-----.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환공여구역을 제2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

<u><신 설></u>	<u>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</u> <u>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.</u> <u>⑥ 제2항에 따라 임대하는 반</u> <u>환공여구역의 임대료는 「국유</u> <u>재산법」 제32조제1항·제33조</u> <u>(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</u> <u>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도 불</u> <u>구하고 해당 재산가액에 연 1</u> <u>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</u> <u>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.</u>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